

주택보증 채권관리규정 등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보증 채권관리규정」, 「주택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주택보증 채권관리 소정양식」

2. 제·개정 이유

- 법률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 개선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4.10.17)에 따른 관련 내규 정비

나. 전세사기 가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합의 해제 근거 마련

다. 소송비용 납부 안내의무를 명시하는 등 구상권관리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4년 9월 27일 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김한아 차장 (happy84@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83
- 팩스번호 : 0505-036-0167

- 붙임 1. 주택보증 채권관리규정 개정 전·후대비표 1부
2. 주택보증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1부
3. 주택보증 채권관리 소정양식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 (주택보증 채권관리규정)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경매예정 통지 및 신탁수익권 행사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3조(정의) 1. ~ 9. (생략) <u><신설></u> <u><신설></u>	제3조(정의) 1. ~ 9. (현행과 같음) 10. “개인금융채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채권을 말한다. 11.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0호를 원인으로 공사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신설
<u><신설></u>	<u>제36조의2(주택경매예정통지)</u> ①제36조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중인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주택경매예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택경매예정통지의 대상주택, 통지시기,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경매예정통지 신설
<u><신설></u>	<u>제41조의2(신탁 수익권의 행사)</u> ①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수익권의 행사 방법은 신탁계약 및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매를 통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한 경우 처분예정 사실 통지, 매각물건조사, 공매신청의 취하, 배분요구,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그 밖에 신탁 수익권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탁수익권의 행사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제53조(준용규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4절의 담보권실행에 관한 규정 제37조부터 제41조를 준용한다.	제53조(준용규정)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4절의 담보권실행에 관한 규정 제36조의2부터 제41조를 준용한다.	

□ (업무효율성 제고) 내규 정비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절차 명확화

현행	개정안	비고																				
제2장 보증채무이행 6. 보증채무이행심사 표준처리기간 운용 가. 처리기간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표준처리기간</th><th>비고</th></tr> <tr> <td rowspan="2">개인보증</td><td>지점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td><td rowspan="4">(생략)</td></tr> <tr> <td>본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td></tr> <tr> <td rowspan="2">사업자보증</td><td>지점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td></tr> <tr> <td>본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td></tr> </table> 12. 담보물처분 전 보증채무이행 (사업자보증) 가. 보증채무이행 요건 사업자보증(개인보증 제외)의 해당 대출 관련 담보물이 처분 완료되기 이전에 보증채무 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고사업장 단위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다만, 사고사업장이 준공(가사용 승인 포함)되어 입주자가 있는 사고사업장은 담보물처분 전 보증채무 이행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구분	표준처리기간	비고	개인보증	지점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생략)	본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자보증	지점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본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제2장 보증채무이행 6. 보증채무이행심사 표준처리기간 운용 가. 처리기간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표준처리기간</th><th>비고</th></tr> <tr> <td rowspan="2">개인보증</td><td>지점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td><td rowspan="4">(생략)</td></tr> <tr> <td>본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td></tr> <tr> <td rowspan="2">사업자보증</td><td>지점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td></tr> <tr> <td>본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td></tr> </table> 12. 담보물처분 전 보증채무이행 (사업자보증) 가. 보증채무이행 요건 <u>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고사업장 단위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담보물이 처분되기 전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다만,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준공(가사용 승인 포함)되어 입주자가 있는 사고사업장은 담보물처분 전 보증채무 이행대상에서 제외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구분	표준처리기간	비고	개인보증	지점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생략)	본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자보증	지점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본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추심착수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반영 현행 보증특약과의 불일치 해소
구분	표준처리기간	비고																				
개인보증	지점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생략)																				
	본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자보증	지점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본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구분	표준처리기간	비고																				
개인보증	지점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생략)																				
	본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자보증	지점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본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제3장 구상권 관리 제1절 채무관계자 관리 3. 채무관계자 규제 및 해제 다. 채무관계자 규제해제 사유 (1) ~ (8) (생략) (9) 위의 (1)부터 (8)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에 채무관계자 재기지원 등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구상권 관리 제1절 채무관계자 관리 3. 채무관계자 규제 및 해제 다. 채무관계자 규제해제 사유 (1) ~ (8) (현행과 같음) (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u>공동관리절차 종료. 다만,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계획대로 이행된 경우에 한함</u>	규제해제 대상확대																				

현행	개정안	비고
	(10) 위의 (1)부터 (9)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에 채무관계자 재기 지원 등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구상권 성과급 등 1. 성과급 지급 다. 성과급의 결정 (1) ~ (5) (생략) (6) (생략) (가) ~ (나) (생략) (다) 분할상환약정 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후 다른 직원 등의 회수활동으로 당초 약정의 부활 또는 신규 분할상환약정 등에 의해 회수한 경우에는 후행한 자가 회수한 것으로 본다.	제9절 구상권 성과급 등 1. 성과급 지급 다. 성과급의 결정 (1) ~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분할상환약정 건에 대한 <u>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한</u> 후 다른 직원 등의 회수활동으로 당초 약정의 부활 또는 신규 분할상환약정 등에 의해 회수한 경우에는 후행한 자가 회수한 것으로 본다.	개인채무자 보호법 상 용어와 통일 (이하 "표현 정비")
<신설>	<u>제9절의2 담보권 실행</u> 1. <u>신탁 수익권의 행사</u> 가. <u>신탁부동산 처분 전 예비조사</u> (1) <u>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u> (가) <u>신탁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자료를 발급 및 조회하여 이해관계인, 선순위 유무, (가)압류, 가처분 여부, 공과금 미납여부에 따른 채납처분 여부</u> (나) <u>신탁부동산의 시가 및 현황</u> (다) <u>신탁부동산에 관한 지출 상황 및 신탁부동산으로부터 회수 예상되는 배분금</u> (2) <u>고객 사후관리카드 등을 통한 면담기록 확인, 신탁부동산 현장확인 등을 통해 임대차 현</u>	신탁수익 권 행사 업무처리 명확화

현행	개정안	비고
	<u>황 및 기타 거주자 유무와 물건 특이사항 등을 조사한다.</u> <u>(3) 예비조사 시 위탁자, 우선수익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미리 파악하여 각종 통지나 우편발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u> <u>나. 처분예정 사실의 통지</u> <u>공매를 통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경우 공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위탁자, 우선수익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며, 반송된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재발송한다. 모두 반송된 경우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날에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u> <u>다. 공매 상세조건의 결정</u> <u>(1) 공매예정가격 등 공매 상세조건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u>(2) 신탁계약서 또는 수탁자의 내부규정에서 공매 상세조건을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한 경우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u> <u>(가) 최초 공매예정가격은 수탁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한다. 이때, 직전 공매절차에서 유찰 등의 사유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직전 공매예정가격에서 10% 차감하여 진행한다.</u> <u>(나) 입찰회차 수는 매 공고 시 7회 이내로 한다.</u> <u>(다) 입찰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효한 입찰이 없는 경우 유찰처리를 하며 다음 입찰회차</u>	개인채무 자보호법 에 따른 주택경매 예정 통지 의무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u>까지 직전 공매절차에서 제시했던 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공고 상태를 전환한다. 다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수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재공매를 실시한다.</u> <u>라. 공매신청의 취하</u> <u>(1)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신청의 취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응할 수 있다.</u> <u>(가) 구상권을 전액 상환하는 때</u> <u>(나) 공매신청에 소요된 비용과 구상권의 일부를 상환하고 잔존 구상권에 대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만, 신탁부동산의 가치가 충분하여 공매를 즉시 실행하지 않아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지점장이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2. 주택경매예정 통지 <u>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경매예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u> <u>(1) 개인금융채무자가 전입신고하여 거주 중인 주택</u> <u>(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중 그 기준가격이 6억원</u>	

현행	개정안	비고
	<u>이하인 주택. 이 때, 기준가격은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와 한국부동산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중 낮은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없는 경우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에 따른다.</u> <u>나. 위 “가”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주택경매예정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한다.</u> <u>(1) 경매신청 대상 주택</u> <u>(2) 경매신청 예정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한다.)</u> <u>(3) 채무조정요건과 요청 절차·방법</u> <u>(4) 개인금융채무자가 주택경매예정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를 신청한다는 내용</u> <u>(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는 사실</u> <u>다. 위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개인금융채무자가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 절차의 시작을 희망하는 의사를 공사에 표시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예정일 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u> <u>라. 위 “가”에 따른 통지는 개인</u>	

현행	개정안	비고
	<u>금융채무자의 주소(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에 해야 한다.</u> <u>마. 위 “가”에 따른 통지가 경매 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u> <u>바. 위 “가”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 “가”의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때, 주택의 경매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u> <u>(1)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u> <u>(2)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공사가 개인금융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u> <u>사. 위 “가” 내지 “바”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u>	

현행	개정안	비고
	<u>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u> <u>(1) 개인금융채무자가 경매신청 예정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규정」 제13조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u> <u>(2)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u>	
제10절 소송 및 변호사 활용 1. 소송업무 바. 소송비용의 처리 (1) (현행과 같음) (2) 소송확정 시 소송비용의 처리 (가) 승소 시 비용처리 ① 구상금청구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청구의 소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대지급금으로 보유하되 채무관계자가 소송비용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한다. ② 위 “①” 이외의 여타소송 - 승소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청구하여 소송비용 관련 가지급금을 대지급금으로 정정하여 관리하고, 법원불인정 부분에	제10절 소송 및 변호사 활용 1. 소송업무 바. 소송비용의 처리 (1) (현행과 같음) (2) 소송확정 시 소송비용의 처리 (가) 승소 시 비용처리 ① 구상금청구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청구의 소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대지급금으로 <u>보유한다. 다만,</u> 채무관계자가 소송비용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u>하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상대방에게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u> ② 위 “①” 이외의 여타소송 - <u>승소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상대방에게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송</u>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 관계자에 대한 납부 안내 명시

현행	개정안	비고
대해서는 손실금 처리한다. 다만,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u>비용을 납부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u> - 소송비용 관련 가지급금을 대지급금으로 정정하여 관리하고, 법원불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금 처리한다. 다만,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u>있으며,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절차를 포기할 수 있다.</u>	
제12절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재산조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 마. 등재의 말소 등 (1) 말소요건 (생략) 말소처리 시 약정에 따른 <u>기한의 이익이 상실될</u> 경우 재등재 신청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2) 재등재 신청 분할상환약정(계약)에 따른 <u>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u> 때 재등재 신청한다.	제12절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재산조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 마. 등재의 말소 등 (1) 말소요건 (현행과 같음) 말소처리 시 약정에 따른 <u>채무 조정 합의가 해제된</u> 경우 재등재 신청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2) 재등재 신청 분할상환약정(계약)에 따른 <u>채무 조정 합의를 해제한</u> 때 재등재 신청한다.	표현정비
제13절 채무조정 1. 채무조정의 기본원칙 가. (생략) 나. 검토사항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소정양식> “채무조정요청서”, 주민등록 초본을 필수로 제출받고 기타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받아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해야	제13절 채무조정 1. 채무조정의 기본원칙 가. (현행과 같음) 나. 검토사항 <u>(1)</u>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소정양식> “채무조정요청서”, 주민등록 초본을 필수로 제출받고 기타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받아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해야	

현행	개정안	비고
한다. (이하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하 생략) <u><신설></u>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2)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3) <u>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이 없더라도 구상채권의 원금 및 대지급금의 합계금액 이상을 상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표 5] “채무조정 전결사항표” 상의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잔여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u>	손해금, 보증료만 남은 경우 잔여채무 감면
다. ~ 마. (생략) 2. 예상구상실익금액 산정방법 가.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물건 (1) (생략) (가) ~ (라) (생략) (마) 해당 부동산 등의 채권보전 조치 해제를 위한 임의상환 또는 분할상환 약정(기한의 이익 상실분 포함)에 따라 기 상환한 금액 (2) ~ (4) (생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 예상구상실익금액 산정방법 가.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물건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해당 부동산 등의 채권보전 조치 해제를 위한 임의상환 또는 분할상환 약정(<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분 포함)에 따라 기 상환한 금액 (2) ~ (4) (현행과 같음)	
5. 분할상환 나. 분할상환 기간 중의 발생 손해금 (1) 채무의 분할상환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소정양식> “채무의 승인 및 <u>분할상환 약정서</u>”에 따라 약정해야 하며 관련 채무관계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다. 분할상환 기간 중의 발생 손해금 (1) ~ (2) (생략) (3)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5. 분할상환 나. 분할상환 기간 중의 발생 손해금 (1) 채무의 분할상환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소정양식> “채무의 승인 및 <u>채무조정서</u>”에 따라 약정해야 하며 관련 채무관계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다. 분할상환 기간 중의 발생 손해금 (1) ~ (2) (현행과 같음) (3)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현행	개정안	비고
상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손해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 ~ (나) (생략) (다) 그 밖에 구상권 회수를 위하여 <u>지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상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손해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구상권 회수를 위하여 <u>[별표5] “채무조정 전결사항표” 상의 전결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전결권자 명확화
라. ~ 마. (생략) 바. 분할상환금 납입관리 및 <u>기한의 이익 상실과 회복</u>	라. ~ 마. (현행과 같음) 바. 분할상환금 납입관리 및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와 회복</u>	표현정비
(1) 분할상환 중인 채무관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때에 <u>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u> 담보권의 실행 또는 강제집행 등 구상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u>기한의 이익상실</u> 예정 통지(최고 포함)를 하고 <u>기한의 이익상실</u> 예정일까지 납입지연된 분할상환금 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때 (나) 분할상환 약정 당시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실익 있는 재산(기 채권보전조치된 물건에 대한 실익금액 포함)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u>기한의 이익상실</u> 예정 통지(최고 포함)를 하고 <u>기한의 이익상실</u> 예정일까지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구상실익금액이 납입되지	(1) 분할상환 중인 채무관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때에 <u>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하고</u> 담보권의 실행 또는 강제집행 등 구상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 통지(최고 포함)를 하고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일까지 납입지연된 분할상환금 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때 (나) 분할상환 약정 당시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실익 있는 재산(기 채권보전조치된 물건에 대한 실익금액 포함)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 통지(최고 포함)를 하고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일까지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구상실익금액이 납입	전세사기 가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합의 해제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비고
않은 때 (다) (생략) <u><신설></u> (2) <u>기한의 이익상실 예정 통지 및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 방법</u>은 다음과 같다. (가) <u>기한의 이익상실 예정 통지</u> (최고 포함)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에 의해 확인가능한 채무자의 최종주소지로 <u>기한의 이익상실 예정일</u>로부터 1개월 전까지 배달증명부내용증명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위 “(가)”의 통지가 반송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종주소지를 확인하고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u>기한의 이익상실 처리</u>하고 개별반송우편물, 송달불능확인서류는 채권철에 편철 보관한다. (다) 위 “(나)”의 반송사유가 이사(주소변동)인 경우로서, 채무자가 분할상환 약정 체결이후 변동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 약정서’ 제6조제2항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u>기한의 이익상실 처리</u>한다. (3) 위 “(1)”의 규정에 따라 <u>기한의 이익상실 예정 통지</u>를	되지 않은 때 (다) (현행과 같음) <u>(라) 분할상환 약정 이후에 해당 채권과 관련하여 「보증유의 및 부실자료제출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상의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 공사가 판단한 때</u> (2)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 통지 및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 통지(최고 포함)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에 의해 확인가능한 채무자의 최종주소지로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배달증명부내용증명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위 “(가)”의 통지가 반송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종주소지를 확인하고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처리하고 개별반송우편물, 송달불능확인서류는 채권철에 편철 보관한다. (다) 위 “(나)”의 반송사유가 이사(주소변동)인 경우로서, 채무자가 분할상환 약정 체결이후 변동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의 승인 및 <u>채무조정서</u>’ 제6조제2항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처리한다. (3) 위 “(1)”의 규정에 따라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 통	

현행	개정안	비고
하는 때에는 <u>기한의 이익상실</u> 예정일까지 미납된 분할상환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을 경우 기 체결한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약정’에 대한 <u>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u> 약정이 실효되고 그에 따라 총채무액을 상환해야 하는 점 및 아래 “(4)”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u>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u> 이후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4) <u>기한의 이익을 상실한</u> 채무관계자가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5] “채무조정 전결사항표”에서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입지연된 분할상환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 받고 분할상환 약정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다만, 위 “(1)(나)”의 규정에 따라 <u>기한의 이익을 상실한</u>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예상 구상실익금액 중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5) <u>기한의 이익을 상실한</u> 채무관계자는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별표5] “채무조정 전결사항표”에서 정한	지를 하는 때에는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예정일까지 미납된 분할상환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을 경우 기 체결한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약정’에 대한 <u>채무조정 합의가 해제</u>되어 약정이 실효되고 그에 따라 총채무액을 상환해야 하는 점 및 아래 “(4)”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u> 이후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4) <u>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u> 채무관계자가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5] “채무조정 전결사항표”에서 정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입지연된 분할상환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 받고 분할상환 약정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다만, 위 “(1)(나)”의 규정에 따라 <u>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u>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예상 구상실익금액 중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 (5) <u>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u> 채무관계자는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별표5] “채무조정 전결사항표”에서 정한	

현행	개정안	비고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1) (생략) (2) 분할상환 약정은 <공사 소정양식> “채무의 승인 및 채권보전조치 해제 <u>분할상환 약정서</u>”에 따른다. (3)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u>기한의 이익상실 예정 통지(최고 포함)</u>를 하고 <u>기한의 이익상실 예정일까지</u> 납입지연된 분할상환금 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때에 <u>기한의 이익을 상실</u>시키고, 이 때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4) 위 “(3)”의 규정에 따라 <u>기한의 이익상실 예정 통지</u>를 하는 때에는 <u>기한의 이익상실 예정일까지</u> 미납된 분할상환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을 경우 기 체결한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약정’에 대한 <u>기한의 이익이 상실</u>되어 약정이 실효되고 그에 따라 총 채무액을 상환해야 하는 점 및 원상회복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명시하여 <u>기한의 이익상실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u> 최고서 등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u>기한의 이익을 상실</u>시킨 이후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5) (생략) 아. 분할상환 중 발견재산에 대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1) (현행과 같음) (2) 분할상환 약정은 <공사 소정양식> “채무의 승인 및 채권보전조치 해제 <u>채무조정서</u>”에 따른다. (3)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 통지(최고 포함)</u>를 하고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일까지</u> 납입지연된 분할상환금 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때에 <u>채무조정 합의를 해제</u>하고, 이 때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4) 위 “(3)”의 규정에 따라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 통지</u>를 하는 때에는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일까지</u> 미납된 분할상환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을 경우 기 체결한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약정’에 대한 <u>채무조정 합의가 해제</u>되어 약정이 실효되고 그에 따라 총 채무액을 상환해야 하는 점 및 원상회복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명시하여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u> 최고서 등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u>채무조정 합의를 해제</u>한 이후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5) (현행과 같음) 아. 분할상환 중 발견재산에 대한	

현행	개정안	비고
업무처리 (1) (생략) (가) (생략) (나) 구상실익이 약정금액을 초과할 때 ① 분할상환(“5. 사. 채권보전 조치 해제를 위한 상환금의 분할상환” 제외) 중인 자가 분할상환 약정 당시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실익있는 재산을 공사에 알리지 않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u>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u> 발견재산 전부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 ② (생략) ③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구상실익금액 이상을 추가로 상환(분할상환 포함)하는 경우에는 <u>기한의 이익을</u> 존속시키고 발견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한다. (2) ~ (3) (생략) 7. 채무관계자 규제해제 및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가. 채무관계자 규제해제 (1) (생략) (2) (생략) (가) ~ (나) (생략) (다) 위 “(가)”에 따라 채무관계자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후 분할상환에 따르는 <u>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u> 때에는 다시 규제해야 한다. 나.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1) ~ (2) (생략)	업무처리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구상실익이 약정금액을 초과할 때 ① 분할상환(“5. 사. 채권보전 조치 해제를 위한 상환금의 분할상환” 제외) 중인 자가 분할상환 약정 당시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실익있는 재산을 공사에 알리지 않고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u>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하고</u> 발견재산 전부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구상실익금액 이상을 추가로 상환(분할상환 포함)하는 경우에는 <u>채무조정</u>을 존속시키고 발견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한다. (2) ~ (3) (현행과 같음) 7. 채무관계자 규제해제 및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가. 채무관계자 규제해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위 “(가)”에 따라 채무관계자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 후 분할상환에 따르는 <u>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한</u> 때에는 다시 규제해야 한다. 나.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1) ~ (2) (생략)	

현행	개정안	비고																																																																		
(3)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과 해제 (가) 위 “(2)”에 의하여 신용도판단정보를 조기해제한 채무관계자가 위 “5. 바. (1)”에 의한 <u>기한의 이익 상실</u>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해제를 취소하고 신용도판단정보를 재등록한다. (나) 재등록시에는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공사 소정양식> “<u>기한의이익상실</u>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예정) 통지서(연체자용)” 또는 <공사 소정양식> “<u>기한의이익상실</u>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예정) 통지서(은닉재산 발견용)”를 통보하도록 한다. (다) <u>기한의 이익</u>이 상실된 채무관계자가 위 “5.바.(3)”에 따라 <u>기한의 이익</u>을 회복하는 경우 재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한다.	(3)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과 해제 (가) 위 “(2)”에 의하여 신용도판단정보를 조기해제한 채무관계자가 위 “5. 바. (1)”에 의한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해제를 취소하고 신용도판단정보를 재등록한다. (나) 재등록시에는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공사 소정양식>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예정) 통지서(연체자용)” 또는 <공사 소정양식>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예정) 통지서(은닉재산 발견용)”를 통보하도록 한다. (다) <u>채무조정 합의가 해제</u>된 채무관계자가 위 “5.바.(3)”에 따라 <u>채무조정</u>을 회복하는 경우 재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한다.																																																																			
[별표 5] 〈채무조정 전결사항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개인 구상권</th><th>사업자 구상권</th></tr> </thead> <tbody> <tr> <td>1. 상각채권 원금감면</td><td>팀장</td><td></td></tr> <tr> <td> <신 설></td><td><신 설></td><td><신 설></td></tr> <tr> <td> <신 설></td><td><신 설></td><td><신 설></td></tr> <tr> <td>2. ~ 4. (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 <tr> <td>5. 분할상환</td><td></td><td></td></tr> <tr> <td> 가. ~ 라. (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 <tr> <td> 마. 기한이익상실 회복 허용(이하 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 <tr> <td> 바. 채무조정 재약정 허용[“5.바.(4)”]</td><td>지점장 (생략)</td><td>지점장 (생략)</td></tr> <tr> <td> 사. (생략)</td><td></td><td></td></tr> <tr> <td>6. ~ 7. (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 </tbody> </table>	구분	개인 구상권	사업자 구상권	1. 상각채권 원금감면	팀장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 4. (생략)	(생략)	(생략)	5. 분할상환			가. ~ 라. (생략)	(생략)	(생략)	마. 기한이익상실 회복 허용(이하 생략)	(생략)	(생략)	바. 채무조정 재약정 허용[“5.바.(4)”]	지점장 (생략)	지점장 (생략)	사. (생략)			6. ~ 7. (생략)	(생략)	(생략)	[별표 5] 〈채무조정 전결사항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개인 구상권</th><th>사업자 구상권</th></tr> </thead> <tbody> <tr> <td>1. <u>잔여채무 감면 등</u></td><td></td><td></td></tr> <tr> <td> 가. <u>잔여채무 감면</u>[“1.나.(3)”]</td><td>담당 임원 (본부장)</td><td>-</td></tr> <tr> <td> 나. 상각채권 원금감면[“1.라”]</td><td>팀장</td><td>-</td></tr> <tr> <td>2. ~ 4.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5. 분할상환</td><td></td><td></td></tr> <tr> <td> 가. ~ 라.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 마. <u>채무조정</u> 회복 허용(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 바. 채무조정 재약정 허용[“5.바.(5)”]</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 사. (현행과 같음)</td><td></td><td></td></tr> <tr> <td>6. ~ 7. (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d>(현행과 같음)</td></tr> </tbody> </table>	구분	개인 구상권	사업자 구상권	1. <u>잔여채무 감면 등</u>			가. <u>잔여채무 감면</u> [“1.나.(3)”]	담당 임원 (본부장)	-	나. 상각채권 원금감면[“1.라”]	팀장	-	2. ~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분할상환			가. ~ 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 <u>채무조정</u> 회복 허용(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채무조정 재약정 허용[“5.바.(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6. ~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결사항 신설 오타수정
구분	개인 구상권	사업자 구상권																																																																		
1. 상각채권 원금감면	팀장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 4. (생략)	(생략)	(생략)																																																																		
5. 분할상환																																																																				
가. ~ 라. (생략)	(생략)	(생략)																																																																		
마. 기한이익상실 회복 허용(이하 생략)	(생략)	(생략)																																																																		
바. 채무조정 재약정 허용[“5.바.(4)”]	지점장 (생략)	지점장 (생략)																																																																		
사. (생략)																																																																				
6. ~ 7. (생략)	(생략)	(생략)																																																																		
구분	개인 구상권	사업자 구상권																																																																		
1. <u>잔여채무 감면 등</u>																																																																				
가. <u>잔여채무 감면</u> [“1.나.(3)”]	담당 임원 (본부장)	-																																																																		
나. 상각채권 원금감면[“1.라”]	팀장	-																																																																		
2. ~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분할상환																																																																				
가. ~ 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 <u>채무조정</u> 회복 허용(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채무조정 재약정 허용[“5.바.(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6. ~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u>제13절의2 강제집행</u> <u>1. 강제집행</u>																																																																			

현행	개정안	비고
	<u>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지체없이 강제집행에 착수한다.</u> <u>나. 주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있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3장 제9절의2 2.”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u> 2. 강제집행 유예 <u>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강제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1), (3)은 담보가 충분하여 강제집행을 즉시 실행하지 않아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유예할 수 있다.</u> <u>(1) 채무관계자가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경우</u> <u>(2) 예상구상실익을 감안할 때 강제집행 실익이 없는 경우</u> <u>(3) 그 밖에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점장이 판단하는 경우</u>	강제집행 업무처리 명확화
제14절 신용회복지원 업무처리 2.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마. 기타 채무관계자가 공사와 분할상환 약정 이후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채무감면안이 확 정 된 경우 공사와의 분할상환 약정은 <u>기한이익상실</u> 처리한다. 3. ~ 5. (생략) 6. 유의사항 가. ~ 마. (생략) <u><신설></u>	제14절 신용회복지원 업무처리 2.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마. 기타 채무관계자가 공사와 분할상환약 정 이후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 여 위원회의 채무감면안이 확정 된 경우 공사와의 분할상환약정은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처리한다. 3. ~ 5. (현행과 같음) 6. 유의사항 가. ~ 마. (현행과 같음) <u>바. 면책에 대한 부동의</u> <u>변제계획 이행 중 면책에 대한 동의</u> <u>요청(신용회복지원협약 제14조제1항</u>	업무지도 내규화

현행	개정안	비고
	<u>제2호</u> 을 접수한 때에는 상각채권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의 회신한다.	
<u><신설></u>	<u>부칙 (29)</u> 이 기준은 2024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목차				목차			
종류	서식 연번	서식종류	Page	종류	서식 연번	서식종류	
보증채무이행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1	보증채무이행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신 설〉			1-2	추심 착수 예정 통지서	
	2	보증채무이행품의서	5		2	보증채무이행품의서	
	3	보증채무이행품의(승인신청)서	6		3	보증채무이행품의(승인신청)서	
	4	보증채무이행 체크리스트	9		4	보증채무이행 체크리스트	
	5	보증채무이행 승인통지서	107		5	보증채무이행 승인통지서	
	6	송금요청서	108		6	송금요청서	
구상권관리	7	확약서(담보물 처분 전 보증채무이행용)	109	구상권관리	7	확약서(담보물 처분 전 보증채무이행용)	
	8	채무승인서	110		8	채무승인서	
	9	채무조정요청서	111		9	채무조정요청서	
	10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 약정서	112		10	채무의 승인 및 채무조정서	
	11	채무의 승인 및 채권보전조치 해제 분할상환 약정서	115		11	채무의 승인 및 채권보전조치 해제 채무조정서	
	12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사회소외계층 원금감면 대상자용)	118		12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사회소외계층 원금감면 대상자용)	
	13	기한의 이익상실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예정) 통지서 (연체자용)	119		13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예정) 통지서 (연체자용)	
	14	기한의 이익상실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예정) 통지서 (은닉재산 발견용)	120		14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예정) 통지서 (은닉재산 발견용)	
	15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서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신청자용)	121		15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통지서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신청자용)	
		〈신 설〉			15-2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통지서 (부실자료제출 확정자용)	
	16	분할상환 조건변경 신청서	122		16	분할상환 조건변경 신청서	
	17	분할상환 조건변경 신청서(분할상환 유예)	123		17	분할상환 조건변경 신청서(분할상환 유예)	
	18	조기상환 신청서	124		18	조기상환 신청서	
	19	분할상환 조건변경 계약서	125		19	분할상환 조건변경 계약서	
	20	채무정리 및 채무조정제도 안내문(주채무자용)	126		20	채무정리 및 채무조정제도 안내문(주채무자용)	
	21	채무정리 및 채무조정제도 안내문(연대보증인용)	128		21	채무정리 및 채무조정제도 안내문(연대보증인용)	
	22	소멸시효완성 안내	129		22	소멸시효완성 안내	
〈신 설〉				〈서식1-2〉 추심 착수 예정 통지서(개인채무자보호법)			
				추심 착수 예정 통지서 귀하 우리 공사는 ○○○님의 부탁에 의해			

현행	개정안																					
	신용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사가 제공한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공사 「주택보증 채권관리규정」에서 정한 이행청구사유의 발생으로 해당 보증이 이행청구된 바, 동 규정에 따른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등의 실시에 앞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지합니다. 1. 보증의 내용 (단위: 원) <table><tr><td>보증구분</td><td colspan="4">(##보증) (##보증번호)</td></tr><tr><td>보증기관</td><td>채권금융기관</td><td>보증금액</td><td>이행청구사유</td><td>이행청구일</td></tr><tr><td>한국주택금융공사</td><td>은행</td><td></td><td></td><td></td></tr></table> 2. 추심 착수 예정일: 0000-00-00 3. 공사 추심담당자 정보 <table><tr><td>추심담당자</td><td>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속부서) (##직급호칭) (##성명)</td></tr><tr><td>사무소</td><td>(주소) (사무실 연락처)</td></tr><tr><td>공사홈페이지</td><td>www.hf.go.kr</td></tr></table> 4. 수행하려는 추심 업무의 방법 - 소재 파악, 재산조사, 추심연락 등 변제촉구, 소송·강제집행 등 법적조치 실시, 변제금 수령 등 5. 채무를 상환하실 때에는 사전에 추심	보증구분	(##보증) (##보증번호)				보증기관	채권금융기관	보증금액	이행청구사유	이행청구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추심담당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속부서) (##직급호칭) (##성명)	사무소	(주소) (사무실 연락처)	공사홈페이지	www.hf.go.kr
보증구분	(##보증) (##보증번호)																					
보증기관	채권금융기관	보증금액	이행청구사유	이행청구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추심담당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속부서) (##직급호칭) (##성명)																					
사무소	(주소) (사무실 연락처)																					
공사홈페이지	www.hf.go.kr																					

현행	개정안
	<u>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고 다음 은행 계좌 중 하나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u> <u>(가상계좌1) (가상계좌2) (가상계좌3)</u> <u>채권추심 관련 안내사항</u> <u>□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u> - <u>채권추심자에 대한 신분확인 증표 제시 요구</u> - <u>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시</u> - <u>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사는 당 신용보증 관련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업무를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한 사실이 없습니다.</u> ▶ <u>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u> ▶ <u>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u> ▶ <u>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 실시</u> ▶ <u>채무대납의 제의 또는 대부업자 등을 통한 자금마련 권유</u> ▶ <u>현금의 수령 또는 채권추심자 본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u> ※ 보다 자세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u>

현행	개정안
	- <u>소멸시효란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u> - <u>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 - <u>일부상환 조건으로 원금감면 등을 권유하는 경우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u> ※ 보다 자세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등에서 정한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 <u>(채무조정)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 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귀하께서는 최초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u> - <u>(분쟁조정) 귀하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u>

현행	개정안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귀하는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 관련 사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공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공사는 귀하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서식10〉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 약정서	〈서식10〉 채무의 승인 및 채무조정서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 약정서 본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간에 년 월 일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서(보증금액: 원)상 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한 승인 및 성실한 이행을 약속 하며 약정내용 이행 완료시 귀 공사는 나머지 채무 에 대한 상환청구를 본인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생략) 제2조(소멸시효의 중단) 본인은 귀 공사에 대한 제1조의 채무승인으로 본인의 <u>구 상채무</u>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을 인정합니다.	채무의 승인 및 채무조정서 (현행과 같음)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소멸시효의 중단) 본인은 귀 공사에 대한 제1조의 채무승인으로 본인의 <u>채 무</u>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 정합니다.

현행	개정안
제3조 ~ 제4조 (생략) 제5조(분할상환 약정의 기한의 이익상실) ①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이 분할상환 약정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 약정이 실효되고, 제1조에서 인정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 귀 공사가 분할상환 약정 전후를 불문하고 본인을 상대로 제1조의 채무에 대하여 취득한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의 효력도 이 분할상환 약정에 불구하고 그대로 지속됨을 인정하고, 이 분할상환 약정이 실효되는 경우에 귀 공사가 동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겠습니다. 1.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귀 공사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 통지(최고 포함)를 받고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일까지 납입지연된 분할상환금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이 분할상환 약정 당시 제3조의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실익있는 재산(부동산,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예적금, 보험금,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말하며, 실익금액의 산정은 귀 공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기채권보전조치된 물건에 대한 실익금액을 포함하여 초과여부를 판단함)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 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로서, 귀 공사로부터 기한의	제3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①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되어 이 약정이 실효되고, 제1조에서 인정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 귀 공사가 채무조정 합의 전후를 불문하고 본인을 상대로 제1조의 채무에 대하여 취득한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의 효력도 이 채무조정 합의에 불구하고 그대로 지속됨을 인정하고, 이 채무조정 합의해제되는 경우에 귀 공사가 동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겠습니다. 1.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귀 공사로부터 채무조정 합의해제 예정 통지(최고 포함)를 받고 합의해제 예정일까지 납입지연된 분할상환금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이 채무조정 합의 당시 제3조의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실익있는 재산(부동산,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예적금, 보험금,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말하며, 실익금액의 산정은 귀 공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기채권보전조치된 물건에 대한 실익금액을 포함하여 초과여부를 판단함)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 이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로서, 귀 공사로부터 채무조정 합의해제 예정 통지(최고 포

현행	개정안
이익상실 예정 통지(최고 포함)를 받고 <u>기한의 이익상실</u> 예정일까지 공사가 산정한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구상실익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절차를 신청하여 <u>이분할상환 약정</u>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판단한 때 <u><신 설></u> ② 이 약정 체결일 이후 본인의 주소가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변동된 주소를 귀 공사에 통지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통지(최고 포함)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귀 공사가 별도의 통지없이 <u>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도</u> 아무런 이의가 없겠습니다. <u>제6조(기한의 이익 원상회복)</u> 본인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u>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u> <u>기한의 이익 원상회복</u>을 신청하고 이 때에 납입지연된 분할상환금 전액 또는 귀 공사가 산정한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구상실익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겠습니다.	함)를 받고 <u>합의해제</u> 예정일까지 공사가 산정한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구상실익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절차를 신청하여 <u>이채무조정 합의를</u>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판단한 때 4. <u>형사판결문 등을 통해 제1조의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유의 및 부실자료제출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상의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 공사가 판단한 때</u> ② 이 약정 체결일 이후 본인의 주소가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변동된 주소를 귀 공사에 통지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통지(최고 포함)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귀 공사가 별도의 통지없이 <u>채무조정 합의해제하여</u>도 아무런 이의가 없겠습니다. <u>제6조(채무조정 원상회복)</u> 본인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u>채무조정 합의해제된 때에는 합의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조정</u> 원상회복을 신청하고 이 때에 납입지연된 분할상환금 전액 또는 귀 공사가 산정한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구상실익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겠습니다.
<u><서식11> 채무의 승인 및 채권보전조치 해제 분할상환 약정서</u>	<u><서식11> 채무의 승인 및 채권보전조치 해제 채무조정서</u>
채무의 승인 및 채권보전조치 해제 분할상환 약정서	채무의 승인 및 채권보전조치 해제 <u>채무조정서</u>

현행	개정안
본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간에 년 월 일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서(보증금액: 원)상 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한 승인 및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며 약정내용 이행 완료시 제11조에 기재한 귀 공사의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1조 (생략) 제2조(소멸시효의 중단) 본인은 귀 공사에 대한 제1조의 채무승인으로 본인의 <u>구상채무</u>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제3조 ~ 제4조 (생략) 제5조(분할상환 약정의 기한의 이익상실) ①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이 <u>분할상환약정의 기한의 이익</u>이 상실되어 이 약정이 실효되며, 제1조에서 인정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 귀 공사가 이 <u>분할상환</u> 약정 전후를 불문하고 본인을 상대로 제1조의 채무에 대하여 취득한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의 효력도 이 <u>분할상환</u> 약정에 불구하고 그대로 지속됨을 인정합니다. 1. 제3조의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귀 공사로부터 <u>기한의 이익상실</u> 예정통지(최고 포함)를 받고 <u>기한의 이익상실</u> 예정일까지 납입지연된 분	(현행과 같음) — 다 음 —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소멸시효의 중단) 본인은 귀 공사에 대한 제1조의 채무승인으로 본인의 <u>채무</u>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제3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채무조정 합의해제) ①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이 <u>채무조정 합의가 해제</u>되어 이 약정이 실효되며, 제1조에서 인정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 귀 공사가 이 <u>채무조정 합의</u> 전후를 불문하고 본인을 상대로 제1조의 채무에 대하여 취득한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의 효력도 이 <u>채무조정 합의</u>에 불구하고 그대로 지속됨을 인정합니다. 1. 제3조의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귀 공사로부터 <u>채무조정 합의해제</u> 예정통지(최고 포함)를 받고 <u>합의해제</u> 예정일까지 납입지연된 분할상

현행	개정안								
할상환금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절차를 신청하여 <u>이분할상환 약정</u>을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판단한 때 <u><신설></u> ② 본인은 위 제1항에 의하여 <u>기한의 이익이 상실</u>된 때에는 제10조에 기재된 채권보전조치 물건을 포함한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③ 이 약정 체결일 이후 본인의 주소가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변동된 주소를 귀 공사에 통지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 제1호의 통지(최고 포함)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귀 공사가 별도의 통지없이 <u>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도</u> 아무런 이익이 없겠습니다.	한금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절차를 신청하여 <u>이 채무조정 합의를</u>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판단한 때 3. <u>형사판결문 등을 통해 제1조의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유의 및 부실자료제출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상의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 공사가 판단한 때</u> ② 본인은 위 제1항에 의하여 <u>채무조정 합의해제</u>된 때에는 제10조에 기재된 채권보전조치 물건을 포함한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③ 이 약정 체결일 이후 본인의 주소가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변동된 주소를 귀 공사에 통지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 제1호의 통지(최고 포함)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귀 공사가 별도의 통지없이 <u>채무조정 합의해제하여도</u> 아무런 이익이 없겠습니다.								
<서식13> <u>기한의 이익상실 및 신용도판단정보</u> 등록(예정)통지서(연체자용)	<서식13>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예정)통지서(연체자용)								
<table border="1" data-bbox="478 1727 762 1821"> <tr> <td>팀원</td><td>팀장</td></tr> <tr> <td></td><td></td></tr> </table> <u>기한의 이익상실 및 신용도판단정보</u> 등록(예정) 통지서	팀원	팀장			<table border="1" data-bbox="1117 1727 1401 1821"> <tr> <td>팀원</td><td>팀장</td></tr> <tr> <td></td><td></td></tr> </table> <u>채무조정 합의해제</u>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예정) 통지서	팀원	팀장		
팀원	팀장								
팀원	팀장								

현행		개정안																					
<u>귀하</u>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공사는 귀하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귀하와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도 판단정보를 해제하였으나, 그간 수차례에 걸친 연체정리 부탁에도 현재 귀하의 분할상환금 납부가 연체되고 있는 바, 2000. 00. 00 까지 아래의 연체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와 약정한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약정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기 체결한 분할상환 약정이 실효되어 분할상환 약정 시 감면하여 드린 채무금액(손해금 등)이 원상회복되고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및 법적절차 시작 등 제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시 개인신용평점·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고, 그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단위 :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최종 납입일</th> <th>연체 횟수</th> <th>연체 금액</th> <th>기한의이 익상실 예정일 및 신용도판 단정보 등록 예정일</th> <th>입금계좌 (택1)</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 연체금액은 2000.00.00. 기준일 현재이며, 고객님의 실제 입금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납입 지연된 분할상환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의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단,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약정의 경우는 당초 약정대로 원상회복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신 경우 본 통지서는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장 (직인생략)		최종 납입일	연체 횟수	연체 금액	기한의이 익상실 예정일 및 신용도판 단정보 등록 예정일	입금계좌 (택1)						<u>귀하</u>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공사는 귀하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귀하와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도 판단정보를 해제하였으나, 그간 수차례에 걸친 연체정리 부탁에도 현재 귀하의 분할상환금 납부가 연체되고 있는 바, 2000. 00. 00 까지 아래의 연체된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와 약정한 '채무의 승인 및 채무조정서'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기 체결한 분할상환 약정이 실효되어 분할상환 약정 시 감면하여 드린 채무금액(손해금 등)이 원상회복되고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및 법적절차 시작 등 제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시 개인신용평점·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고, 그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단위 :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최종 납입일</th> <th>연체 횟수</th> <th>연체 금액</th> <th>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일 및 신용도판 단정보 등록 예정일</th> <th>입금계좌 (택1)</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 연체금액은 2000.00.00. 기준일 현재이며, 고객님의 실제 입금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납입 지연된 분할상환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채무조정의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단,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약정의 경우는 당초 약정대로 원상회복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신 경우 본 통지서는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장 (직인생략)		최종 납입일	연체 횟수	연체 금액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일 및 신용도판 단정보 등록 예정일	입금계좌 (택1)					
최종 납입일	연체 횟수	연체 금액	기한의이 익상실 예정일 및 신용도판 단정보 등록 예정일	입금계좌 (택1)																			
최종 납입일	연체 횟수	연체 금액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일 및 신용도판 단정보 등록 예정일	입금계좌 (택1)																			

현행	개정안								
전화번호 : 담당자 :	전화번호 : 담당자 :								
〈서식14〉 기한의 이익상실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예정)통지서(은닉재산 발견용)	〈서식14〉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예정)통지서(은닉재산 발견용)								
<table border="1"> <tr> <td>팀원</td> <td>팀장</td> </tr> <tr> <td></td> <td></td> </tr> </table> 기한의 이익상실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예정) 통지서 _____ 귀하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공사는 귀하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귀하와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여 귀하가 분할상환 하고 있으나, 재산조사 결과 분할상환약정 당시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실익있는 귀하 소유의 재산이 발견되었는 바, 2000. 00. 00 까지 아래의 공사가 산정한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구상실익 금액(약정금액 초과분)을 일시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하와 약정한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정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기 체결한 분할상환 약정이 실효되어 분할상환 약정 시 감면하여 드린 채무금액(손해금 등)이 원상회복되고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및 법적절차 시작 등 제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시 개인신용평점·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고, 그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팀원	팀장			<table border="1"> <tr> <td>팀원</td> <td>팀장</td> </tr> <tr> <td></td> <td></td> </tr> </table>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및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예정) 통지서 _____ 귀하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공사는 귀하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귀하와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여 귀하가 분할상환 하고 있으나, 재산조사 결과 분할상환약정 당시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실익있는 귀하 소유의 재산이 발견되었는 바, 2000. 00. 00 까지 아래의 공사가 산정한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구상실익 금액(약정금액 초과분)을 일시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귀하와 약정한 '채무의 승인 및 채무조정서'에 따라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기 체결한 분할상환 약정이 실효되어 분할상환 약정 시 감면하여 드린 채무금액(손해금 등)이 원상회복되고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및 법적절차 시작 등 제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시 개인신용평점·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고, 그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팀원	팀장		
팀원	팀장								
팀원	팀장								

현행					개정안																								
- 아 래 - (단위 :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분할상환 약정 금액</td> <td style="width: 15%;">발견재산 평가금액</td> <td style="width: 15%;">약정금액 초과분</td> <td style="width: 20%;">기한의이익상실 예정일 및 신용도판 단정보 등록 예정일</td> <td style="width: 35%;">입금계좌 (택1)</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 재산조사 결과 파악된 귀하 소유재산 목록 및 평가액은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견재산의 예상구상실익금액 중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기한의이익의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 기한의 이익상실 시 발견된 재산에 대한 공사의 법적 절차(경매 등)가 시작됩니다. 년 월 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장 (직인생략) 전화번호 : 담당자 :					분할상환 약정 금액	발견재산 평가금액	약정금액 초과분	기한의이익상실 예정일 및 신용도판 단정보 등록 예정일	입금계좌 (택1)						- 아 래 - (단위 :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분할상환 약정 금액</td> <td style="width: 15%;">발견재산 평가금액</td> <td style="width: 15%;">약정금액 초과분</td> <td style="width: 20%;">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일 및 신용도판 단정보 등록 예정일</td> <td style="width: 35%;">입금계좌 (택1)</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 재산조사 결과 파악된 귀하 소유재산 목록 및 평가액은 지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견재산의 예상구상실익금액 중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채무조정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시 발견된 재산에 대한 공사의 법적 절차(경매 등)가 시작됩니다. 년 월 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장 (직인생략) 전화번호 : 담당자 :					분할상환 약정 금액	발견재산 평가금액	약정금액 초과분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일 및 신용도판 단정보 등록 예정일	입금계좌 (택1)					
분할상환 약정 금액	발견재산 평가금액	약정금액 초과분	기한의이익상실 예정일 및 신용도판 단정보 등록 예정일	입금계좌 (택1)																									
분할상환 약정 금액	발견재산 평가금액	약정금액 초과분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예정일 및 신용도판 단정보 등록 예정일	입금계좌 (택1)																									
<서식15>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서(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신청자용)					<서식15>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통지서(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신청자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팀원</td> <td style="width: 50%;">팀장</td> </tr> <tr> <td> </td> <td> </td> </tr> </table>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서 귀하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공사는 귀하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귀하와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여 귀하가 분할상환하고 있었으나, 2000.00.00자로 귀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					팀원	팀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팀원</td> <td style="width: 50%;">팀장</td> </tr> <tr> <td> </td> <td> </td> </tr> </table>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통지서 귀하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공사는 귀하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귀하와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여 귀하가 분할상환하고 있었으나, 2000.00.00자로 귀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					팀원	팀장														
팀원	팀장																												
팀원	팀장																												

현행	개정안																
어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약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u>기한의 이익을 상실</u> 처리하여 분할상환 약정이 파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로 더 이상 분할상환금을 납입할 수 없으며, 이후 채무상환은 귀하가 신청한 절차에 따라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셔야 하며, <u>기한의 이익 상실</u> 후 귀하의 채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단위 :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분할상환 약정금액</th><th>분할상환 입금액</th><th>구상권 총잔액</th><th>기한의이익 상실일</th></tr> </thead> <tbody> <tr> <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 위 금액은 통지서 발송일 기준 금액임 * 향후, 개인회생·파산 또는 신용회복지원 결정 취소 시 공사 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재약정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며, 다만, 채무감면 범위 및 분할상환 조건 등은 재약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 당초 약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장 (직인생략) 전화번호 : 담당자 :	분할상환 약정금액	분할상환 입금액	구상권 총잔액	기한의이익 상실일					어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약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처리하여 분할상환 약정이 파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로 더 이상 분할상환금을 납입할 수 없으며, 이후 채무상환은 귀하가 신청한 절차에 따라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셔야 하며,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u> 후 귀하의 채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단위 :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분할상환 약정금액</th><th>분할상환 입금액</th><th>구상권 총잔액</th><th><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일</u></th></tr> </thead> <tbody> <tr> <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 위 금액은 통지서 발송일 기준 금액임 * 향후, 개인회생·파산 또는 신용회복지원 결정 취소 시 공사 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재약정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며, 다만, 채무감면 범위 및 분할상환 조건 등은 재약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 당초 약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장 (직인생략) 전화번호 : 담당자 :	분할상환 약정금액	분할상환 입금액	구상권 총잔액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일</u>				
분할상환 약정금액	분할상환 입금액	구상권 총잔액	기한의이익 상실일														
분할상환 약정금액	분할상환 입금액	구상권 총잔액	<u>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일</u>														
<신 설>	<서식15-2> <u>채무조정 합의해제 통지서(부실자료 제출 확정사용)</u>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width: 50px;">팀원</td><td style="width: 50px;">팀장</td></tr> <tr> <td></td><td></td></tr> </table> <u>채무조정 합의해제 통지서</u> _____ 귀하 <u>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u> <u>우리 공사는 귀하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귀하와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도 판단</u>	팀원	팀장														
팀원	팀장																

현행	개정안								
	정보를 해제하여 귀하가 분할상환하고 있었으나, 2000.00.00자로 귀하가 부실자료제출 확정자인 것으로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채무조정 합의해제하여 분할상환 약정이 파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채무조정 합의해제로 더 이상 분할상환금을 납입할 수 없으며, 분할상환 약정 시 감면하여 드린 채무금액(손해금 등)이 원상회복되고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및 법적절차 시작 등 제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합의 해제 후 귀하의 채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시 개인신용평점·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고 그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단위 :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분할상환 약정금액</th><th>분할상환 입금액</th><th>구상권 총잔액</th><th>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일</th></tr> </thead> <tbody> <tr> <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 위 금액은 통지서 발송일 기준 금액임 년 월 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장 (직인생략) 전화번호 : 담당자 :	분할상환 약정금액	분할상환 입금액	구상권 총잔액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일				
분할상환 약정금액	분할상환 입금액	구상권 총잔액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일						
<신 설>	<서식23> 주택경매 예정통지서(개인채무자보호법)								
	<u>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u> _____ 귀하 귀하께서 그간 이용하신 (보증일자)(채권은행)(보증종류) 대출금 등이 제때 상환되지 않아 공사가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채무 상환을 수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시지 않아 아래의 주택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개정안																								
	※ 경매신청 예정일 : 20 경매신청예정일까지 구상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아래 주택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을 통지하오니 구상권 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 아 래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경매신청 대상 주택</td><td style="text-align: center;">소유주</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소</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대위 변제 상세 내용 (단 위: 원)</td><td style="text-align: center;">채권 은행</td><td style="width: 150px;"></td><td style="text-align: center;">대출금</td><td style="width: 100px;"></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위 변제 일자</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대위변제금</td><td></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증 목적 물</td><td colspan="3"></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사 승소 일</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채무조정 요청가능 기한</td><td></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구상 권 잔액 (원)</td><td colspan="2"> ☐ 대위변제금 잔액 ☐ 대지금금(소송비용 등) ☐ 손해금 등(이자) </td><td style="text-align: right;"> 원 원 원 </td></tr> </table> ※ 구상권잔액 산정 기준일 : 20 년 월 일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 사 담당자 ○○○ (Tel. 00-0000-0000, fax. 0000-000-0000)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경매신청 대상 주택	소유주	주소	대위 변제 상세 내용 (단 위: 원)	채권 은행		대출금		대위 변제 일자		대위변제금		보증 목적 물				공사 승소 일		채무조정 요청가능 기한		구상 권 잔액 (원)	☐ 대위변제금 잔액 ☐ 대지금금(소송비용 등) ☐ 손해금 등(이자)		원 원 원
경매신청 대상 주택	소유주																								
	주소																								
대위 변제 상세 내용 (단 위: 원)	채권 은행		대출금																						
	대위 변제 일자		대위변제금																						
	보증 목적 물																								
	공사 승소 일		채무조정 요청가능 기한																						
	구상 권 잔액 (원)	☐ 대위변제금 잔액 ☐ 대지금금(소송비용 등) ☐ 손해금 등(이자)		원 원 원																					

현행	개정안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채무조정 절차> <table><tr><th>①요청</th><th>②심사 및 결과 통지</th><th>③동의</th><th>④채무조정서 작성</th><th>⑤합의</th></tr><tr><td>(채무자) 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td><td>(공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td><td>(채무자) 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를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td><td>(공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td><td>(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td></tr></table>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 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공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를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공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 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공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 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를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공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현행	개정안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